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1,159개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4일(토)자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 `23.12.26일(화) 행정예고 하였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 상황허가 : 비(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 필요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24일(토)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①기(既)계약분 수출(2.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②자회사향(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되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예 (044-203-4830)
		담당자	사무관	방규철 (044-203-4832)
			사무관	서현우 (044-203-4836)

1 對러/벨 수출통제 품목 확대

-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국제사회 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추가 <별표2-2>

개정 전 798개	개정 후 1,159개
(현재) 전자, 조선, 산업·건설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등	(신규)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 (통제기준 변경)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 기준에서 품명·기술 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 기준(승용차)으로 변경

품목 구분	통제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 관련 품목	품명(기술사양)	품명(기술사양)
일반산업품목		HS 6단위 코드
승용차	미화 5만불 초과	배기량 2,000CC 초과

- (허가 지침 신설) 그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對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별표24>

* 전략물자 ⇒ 거부 / 상황허가 ⇒ 원칙적 거부 및 사안별 심사
 사안별 심사대상 : 고시 시행 전 既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向 수출 등

2 제도 개선

-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 마련 <33조 2항 및 39조 2항>

* 다만, 방사청과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

- KOICA의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를 신설,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 추진 <26조 1항 4호>

- 원자력전용품목 박람회 등 출품시 허가 면제 적용 <26조 1항 8호>

- 원자력전용기술 허가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20개국)에서 협정 체결국(29개국)으로 확대 <별표 13-2>

* NSG 未가입국이나, 우리와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UAE, 사우디 등 9개국 대상 면제 확대